

인천광역시 강화군

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군 보

제1414호

2026년 5월 21일(목)

- 차 례 -

입법예고

제2026-872호 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- 1

고시

제2026-130호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(길상공원)- 13

공고

제2026-844호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공고(길상어린이공원)- 16

제2026-858호 보상계획 열람공고(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) - 18

제2026-868호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[군도12호선(탑재~어류정향)도로확포장공사]- 22

입법예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872호

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「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강 화 군 수

1. 조 례 명: 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

2. 개정이유

- 농업용수 이용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.
-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시설물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리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조문 이동에 다른 조례 조문 정비
- 수리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관리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
- 수리계 운영에 대한 지도·감독 규정 정비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강화군수(건설과장)에게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기간: 2026년 6월 10일까지

나. 의견제출 방법: 우편 또는 팩스

1) 주 소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(강화군청 건설과)

2) 팩 스: 032-930-3646

(팩스로 의견 제출 시 건설과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3) 전자우편(이메일): holic77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내용
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찬·반 여부 및 사유
		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

2)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3)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설과(032-930-3442)로 문의하시기
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으니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공청회 개최계획: “개최계획 없음”

강화군 조례 제 호

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강화군 수리계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강화군 수리계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란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규약”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.
3. “수혜지역”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수혜를 받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①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이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② 시설 중 관정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이용은 「지하수법」에 따른다.

제4조(감독기관) ①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수리계를 감독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, 수혜지역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리계의 감독 권한을 읍장·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5조(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) ① 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군수가 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.

1.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

2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
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혜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③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규약

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

3. 구역의 농지대장

4. 임원선출 회의록

5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④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⑤ 군수는 관할 구역의 수리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, 등록사항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리계의 임무)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리계 자체의 부담으로 시설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스스로의 힘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시설의 점검 및 복구) 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과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경비의 부과) ① 수리계는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1. 운영·경비: 시설의 유지비·관리비 전액
 2. 파손된 시설의 복구비(재해복구비 포함): 필요한 비용 중 강화군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 3. 시설의 감가상각비: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(耐用年數)로 나눈 금액
- ②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9조(수리계 운영비 지원) ① 군수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시설의 유지·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공요금, 유류비

2. 시설 유지·관리비

3. 시설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인건비(수혜면적 산출)

4.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
②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수리계 운영·경비 보조금 지원 및 제한 등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서류의 비치) 수리계장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, 수리계원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1. 수리계 등록신청 관련 서류

2. 규약,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 정한 서류

제11조(수리계 해산)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수혜지역이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경우

2. 수혜지역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경우
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이 파손되어 그 시설을 고치거나 보수하는 것에 경제성이 없는 경우

② 수리계는 「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3호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. 다만,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수리계장은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, 지체 없이 수리계의 장부 및 서류 전부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 쪽)

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				처리기간
				10일
신 청 인 (수리계장)	성 명		생년월일	
	주소(소재지)			
계의 명칭				
계 원 수				
구역 면적	ha			
수혜 면적	ha			
농업기반시설현황				
시 설 명	시 설 형 태	소 재 지	수 혜 면 적	비 고
「강화군 수리계 관리 조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 청 인			서명 또는 인	
강화군수 귀하				
※ 첨부서류				수 수 료
1. 규약 1부				없 음
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1부				
3. 구역의 농지대장 1부				
4. 임원선출 회의록 1부				
5. 수혜지역 구역도(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) 1부				
※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, 부속시설, 보조시설로 구분표시				

수리계 등록신청 안내

(뒷 쪽)

제출 및 처리기관	강 화 군 수
근 거 법 규	<p>「강화군 수리계 관리 조례」 제5조(수리계 조직기준 및 등록)</p> <p>① 수리계 조직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군수가 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<p>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혜자에게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<u>2 이상</u>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.</p> <p>③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약 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. 구역의 농지대장 4. 임원선출 회의록 5.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	처리기관(군수)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80%; margin: 0 auto;">신청서 작성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80%; margin: 0 auto;">접 수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80%; margin: 0 auto;">검 토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80%; margin: 0 auto;">등록증 발급</div>

[별지 제3호서식]

수 리 계 등 록 증

계 의 명 칭 :

대표자 성명 :

생년월일 :

주 소(소재지) :

구 역 면 적 :

ha

수 혜 면 적 :

ha

「강화군 수리계 관리 조례」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강 화 군 수 (인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개정(안)	수정(안)	찬반여부 및 사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체적으로 기술 -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

고시

강화군 고시 제2026-130호

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- 길상공원 -

강화군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어린이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(☎032-930-3198), 산림공원과(☎032-930-3459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6. 5. 15.

강 화 군 수

1. 결정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

2. 위치

- 인천광역시 강화군길상면 온수리 82-9번지 일원

3.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

-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증감		
변경	A	길상공원	길상면 온수리 82-9 일원	14,352	14,417.8	증)65.8	강화군고시 제2025-103호 (2022. 6. 2.)	

○ 도시관리계획(공간시설: 어린이공원) 변경 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A	길상공원	○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 면적 변경 -당초 면적 : A=14,352㎡ -변경 면적 : A=14,417.8㎡ (증: A=65.8㎡)	○ 지적확정 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등. ※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면적 5%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

○ 편입토지조사

위치	지번		지목		공부면적(㎡)		편입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		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성명	구분				
					14,352	14,417.8	14,352	14,417.8						
길상면 온수리	53-10	772	답	답	619.0	623.4	619.0	623.4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82-9	770	답	답	2,292.0	3,140.4	2,292.0	3,140.4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82-11		답		830.0		830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69-2	768	답	답	1,573.0	4,445.5	1,573.0	4,445.5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69-3		답		2,566.0		2,566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70-3		전		298.0		298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80-1	776	전	답	107.0	5,177.4	107.0	5,177.4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81-1		답		956.0		956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81-2		답		2,681.0		2,681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81-3		답		851.0		851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81-4		답		530.0		530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481-30		답		21.0		21.0		강화군	공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688	769	구	구	781.0	128.0	781.0	128.0	농림축산 식품부	국유지				
		773							구	16.2	16.2	농림축산 식품부	국유지	
		774							구	64.7	64.7	강화군	공유지	
		775							구	128.0	128.0	농림축산 식품부	국유지	
길상면 온수리	695	777	도	도	212.0	211.3	212.0	211.3	국토 해양부	국유지				
길상면 온수리	741	771	도	도	35.0	37.8	35.0	37.8	국토 해양부	국유지				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/>)에서 열람 가능

공 고

강화군 공고 제2026-844호

인천 도시관리계획 【공원조성계획(변경): 길상어린이공원】 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열람 공고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[공원조성계획(변경): 길상어린이공원] 결정 입안을 위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18.

강 화 군 수

1. 공원개요

- 공원명 : 길상공원(어린이공원)
- 위 치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82-9번지 일원
- 면 적 : 14,417.8㎡

2. 공원조성계획(변경) 결정 입안사유

-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등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증감		
변경	A	길상공원	길상면 온수리 82-9 일원	14,352	14,417.8	증)65.8	강화군고시 제2025-103호 (2022. 6. 2.)	

3. 도시관리계획[공원조성계획(변경)]결정 편입조서(붙임1)

4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5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-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○ 의견제출 :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열람장소 :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(☎930-3467)

붙임1)

편 입 토 지 조 서

위치	지번		지목		공부면적(㎡)		편입면적(㎡)		소유자		비고		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성명	구분			
					14,352	14,417.8	14,352	14,417.8					
길상면 온수리	53-10	772	답	답	619.0	623.4	619.0	623.4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82-9	770	답	답	2,292.0	3,140.4	2,292.0	3,140.4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82-11		답		830.0		830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69-2	768	답	답	1,573.0	4,445.5	1,573.0	4,445.5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69-3		답		2,566.0		2,566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70-3		전		298.0		298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80-1	776	전	답	107.0	5,177.4	107.0	5,177.4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81-1		답		956.0		956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81-2		답		2,681.0		2,681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81-3		답		851.0		851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81-4		답		530.0		530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481-30		답		21.0		21.0		강화군	공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688	769	구	구	781.0	573.1	781.0	573.1	농림축산 식품부	국유지			
		773							16.2	16.2	농림축산 식품부	국유지	
		774							64.7	64.7	강화군	공유지	
		775							128.0	128.0	농림축산 식품부	국유지	
길상면 온수리	695	777	도	도	212.0	211.3	212.0	211.3	국토 해양부	국유지			
길상면 온수리	741	771	도	도	35.0	37.8	35.0	37.8	국토 해양부	국유지			

강화군 공고 제2026-858호

보상계획 열람 · 공고

[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]

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시행하는 『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·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(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자 및 주소, 물건종류, 수량 등)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5. 20.

강 화 군 수

1. 사업의 개요	사업의 위치	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일원
	사업의 종류 및 명칭	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
	사업규모 및 기간	규모 : L=123m, B=1.0~1.5m 기간 : 2026월 5월 ~ 도로공사 완료시
	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	사업시행자 : 강화군수(강화읍 강화대로 394) 보상사무소 : 강화군청 도로교통과(☎ 032-930-3739)
2. 보상대상물건	토지 및 물건조서 : 별첨(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)	
3. 보상계획열람	① 열람장소 - 강화군청 도로교통과(강화읍 강화대로 394) ☎ 032)930-3739 - 내가면사무소(내가면 강화서로 249) ☎ 032)930-4460 ②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6. 5. 20.(수) ~ 2026. 6. 4.(목) (09:00~18:00)	

4. 보상의 시기·방법 절차

구 분	예정일정	주 요 내 용
감 정 평 가	2026/6~7월부터	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”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상 계획열람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증빙서류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습니다.
손실보상액 산정 및 통보	2026/7-8월부터	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”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보상협의를 및 계약 체결	2026/7~8월부터	보상협의를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요청서(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)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, 협이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.
보상금지급 청구 및 지급 방법	2026/8~10월부터	보상금 지급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종료 합니다. 단,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권리를 해지 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하며, 대금지급에는 행정 소요일이 필요합니다.
수용재결	2026. 12월 예정	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을 하며,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.

5. 기 타

- ① 상기 보상계획은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보상의 시기, 계획 일정, 보상의 내역 등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
- ③ 물건조서의 경우 “공고대상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”를 포함합니다.
(보상대상 내역은 추후 확정측량, 계획변경, 재조정,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.)

보상계획 열람 내역(토지)

○공사명 : 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

일련 번호	소 재 지					평입지번	면적(㎡)	지목	지분	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고
	군·구	읍·면	리	지 번	공부면적(㎡)	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관리관계	
1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3-9	712.0	623-19	6.0	대	1/1	이*리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***동 ****호(**동 ****아파트)	인천****협동조합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	근저당	
2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3-8	137.0	623-18	92.0	답	1/1	한*석	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***-(**동 *층)				
3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3-3	266.0	623-16	72.0	대	1/1	김*필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정로구로 ***	경인****협동조합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	근저당	
4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3-14	135.0	623-14	135.0	답	1/1	김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정로구로 ***번길 *	인천****협동조합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	근저당	
5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3-7	242.0	623-17	242.0	답	1/1	김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정로구로 ***번길 *	인천****협동조합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	근저당	
6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5	93.0	625-1	93.0	전	1/1	김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정로구로 ***번길 *	인천****협동조합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	근저당	
7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23-13	366.0	623-20	366.0	답	1/1	김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정로구로 ***번길 *	인천****협동조합	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***	근저당	
8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1218-17	1,932.0	1218-17	1,932.0	도	1/1	국	국토교통부				
9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15-3	17.0	615-3	17.0	답	1/2	조*진	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**번길 **(**동)				
										조*진	서울 강서구 화곡로 **번길 **(**동)				
10	강화군	내가면	오상리	611-2	43.0	611-2	43.0	도	1/1	김*수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***				

보상계획 열람공고 내역(물건)

○공사명 : 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

일련 번호	소 재 지		지 번	종류	구조	수 량	주	소 유 자		관 계 인			비고
	읍·면	리		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관 리	
1	내가면	오상리	623-7	수목	소나무	2	주	김*자	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정로구로 ***번길 *				

의 견 서

사 업 명 : 내가면 오상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

1. 제 목

2. 당사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2026. . .

의견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연 락 처 :

강 화 군 수 귀 하

비 고

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강화군 공고 제2026 - 868호

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

[군도12호선(탑재~어류정항)도로확포장공사]

도로법 제39조(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)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21일

강 화 군 수

1. 도로의 종류 : 군도
 2. 노선번호 : 12호선
 3. 사용 개시 구간 :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55-74번지 일원
(L=0.12km, B=9.5m)
 4. 주요 통과지 :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55-74번지
 5. 사용 개시일 : 도로의 사용 개시 공고일
 6.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
 - 가. 열람기간 : 2026.05.21. ~ 2026.06.04
 - 나.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,
강화군청 도로과(☎032-930-3472)
- 붙임 : 위치도 및 지형도 각1부.

붙임1 위치도



붙임2 지형도면

